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5,948,458	18,178,454
일반회계	540,371,223	16,211,137
특별회계	65,577,235	1,967,317
공기업특별회계	48,358,508	1,450,75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2,877,512	386,325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5,480,996	1,064,430
기타특별회계	17,218,727	516,562
의료보호특별회계	2,318,777	69,56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84,284	26,52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428,753	312,863
주택사업특별회계	472,451	14,174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114,462	93,4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해당없음 "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해당없음 " 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85,18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